

“임업후계자” 가 되고 싶습니다.

1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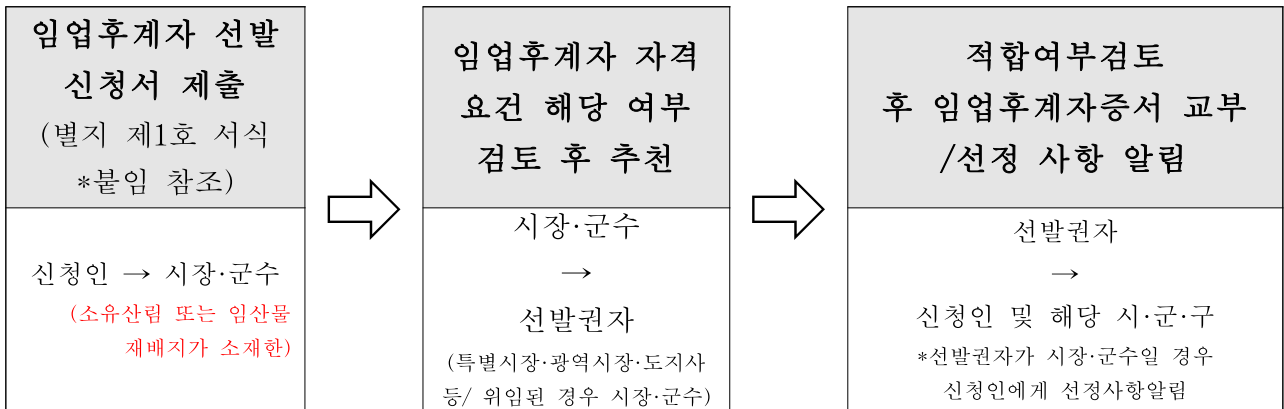
구 분	자 격 요 건	접 수
임 업 후 계 자	①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독립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m ² ~10,000m ²)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m ² ~10,000m ²)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교육이수: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 -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시장·군수 ·구청장

2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임업 후계자 선발은 해당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가 위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신청인 주소지와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와의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종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임업후계자 선발권자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① 인터넷 민원24에 신고 ② 각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관련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신청 절차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짜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필,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꿀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붙임]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임업후계자 선발·독립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	---------------------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숲가꾸기 ha, 간벌 ha, 주벌 m ³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 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처리기관 : ○○ 시·도지사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립가의 자녀
 -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2.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21-6호, 시행 2021.5.1]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층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1. 산림사업 종합자금 용자 ('22년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중 발취)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

(1) 사업대상자

-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포함)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교육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등 집단전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동안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의 동일목적 사업으로 기 대출금액과 당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5억원을 초과한 자(신청연도 기준)
 - * 단, 임야매입 자금은 최근 3년동안 기 대출금액과 당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3억을 초과할 수 없다.
 - * 동일목적은 장기수사업, 임도시설, 사립휴양시설조성,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구분
 - 법인사업자는 대출 불가(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대출 가능)
 - 협회분 및 비협회분 중복 배정 불가(단, 협회회원이라도 비협회분에만 대출 신청하여 배정받는 것은 가능)
 -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 대출 이후 타 임업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용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용자 신청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와 휴학중인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3) 지원대상 및 형태

-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용자 기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 장기수 사업	1.0	35	20	15	사업자당 300백만원이내	사업비의 100%
- 임도시설		35	20	15		
- 사립휴양시설조성		35	20	15		
- 단기산림소득지원	2.0	15	5	10		

(4) 사용용도 및 범위

- 장기수 사업
 - 장기수·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를 위한 사업비 및 임야매입·임차자금
- 임도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제3자 사립휴양시설조성’의 용도 및 자격요건과 동일
 - *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자(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구성원이 개별사업수행자로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능
 -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임차 가능
-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 종자·종묘, 임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재배·유통·가공·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체(임야매입·임차 가능)
 - *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산물 저장고, 재배사, 작업로, 가공시설 등 임산물 생산·재배·유통·가공·관리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가능
 - * 태양광 설치 불가

- * 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함
- *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대출기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가능
- 차량(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참고4]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지원하며 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차량가격만 3,000만원 내로 지원 가능
- 굴착기는 1톤 이하만 인정
- 유실수·조경수의 생산자금 및 임야매입·임차자금

2.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중 발취)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용자-,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1~2월 중
사업 목적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종자·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숲가꾸기(숙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과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p>	<p>(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간 분할지원 가능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40% 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묘목구입비(20% 이하),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 	<p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가능 *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p>	<p>-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395 1066 1407 1393"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품목의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 부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개소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림버섯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상산림식물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p>-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3. 세제감면

세제명	감면혜택	법령명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 면제 ▪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